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17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6누563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의료법인 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도 [redacted]시장
제1심 판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6. 6. 15. 선고 2015구합67688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12. 14.
판 결 선 고	2017. 1. 18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3. 12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8,535,540원, 지방교육세 15,063,350원, 농어촌특별세 10,042,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17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.

【 (4) 원고는 2012년경 공사수급인이 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축대지지 보호망이 이탈된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, 그 이후 2013년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하여 일정 기간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. 따라서 원고가 2014. 11. 14.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2년 8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 】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용빈

판사 김경환

판사 정승규